
 <b>산업통상자원부</b> <a href="http://www.motie.go.kr">http://www.motie.go.kr</a>		<h1>보 도 자 료</h1>			
<b>2019년 10월 21일(월) 조간부터</b>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0.20.(일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					
배포일시	2019. 10. 18.(금)	담당부서	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		
담당과장	홍순파 과장(043-870-5450)	담당자	김지훈 사무관(043-870-5455)		

## 휴대폰케이스, 요가매트 등의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한다.

- 산업부,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'합성수지제품' 을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 -

- 휴대폰케이스, 요가매트를 비롯해 일상생활에서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유해물질 전이의 우려가 있는 합성수지 재질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.
-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이승우)은 '합성수지제품'을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상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,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.

<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인 '합성수지제품' 종류 >

		
매트류	신발류	기타류 (휴대폰케이스, 짐볼 등)


- 해당 제품들은 사용 과정에서 피부와 지속적으로 접촉되고, 사용 중 발생하는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이 용출되어 우리 몸으로 전이될 수 있어,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.

- 산업통상자원부는 '합성수지제품'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을 개정·공포(10.21) 하였으며, 관리대상 제품 종류 및 유해물질 기준\* 등을 규정한 세부 안전기준의 제정 절차가 완료되면 1년의 유예기간 이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\* 유해물질 기준 : 중금속(납, 카드뮴)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(3종) 허용치

- '합성수지제품'이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되면,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강제 인증의 의무는 없으나 제품의 출고/통관(수입품일 경우)전에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자율적인 방법으로 확인한 후, 제품에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.
- '합성수지제품'이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포함됨에 따라 일상 생활용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아울러 정부는 안전기준의 시행 이후에는 시장 감시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.

<붙임> 합성수지제품 종류 및 유해물질 안전기준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김지훈 사무관(☎ 043-870-545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## 붙임 합성수지제품 종류 및 유해물질 안전기준

### 1. 합성수지제품 종류

구분	종류
매트류	요가매트, 돛자리매트, 주방매트 등
신발류	슬리퍼, 욕실화, 깔창 등
기타류	휴대폰케이스, 짐볼, 이어폰류, 변기시트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제품

### 2. 유해물질 안전기준

유해물질	허용치	인체 영향
납 함유량	300 mg/kg 이하	암,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
카드뮴 함유량	75 mg/kg 이하	피부염, 신장 및 호흡기 부작용, 암 등을 유발
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	DEHP DBP BBP 총합 0.1 wt% 이하	내분비계 장애 유발

1. DEHP(Diethylhexyl Phthalate,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)
2. DBP(Dibutyl Phthalate, 다이부틸프탈레이트)
3. BBP(Butyl benzyl Phthalate, 부틸벤질프탈레이트)